

제51호(2018. 8. 31.)

# WTO SPS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현황 및 사례

오새라 조성주



[ 목 차  
contents ]

1. SPS STC(특정무역현안) 동향 ..... 1
2. 우리나라의 SPS STC 현황 및 사례 ..... 6
3. 시사점 ..... 16

감 수	김상현 부연구위원	061-820-2280	sanghyun@krei.re.kr
내용 문의	오새라 연구원	061-820-2042	aminail@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51호

## WTO SPS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현황 및 사례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8. 8.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약  
Summary

- WTO 회원국은 SPS 조치가 통상 마찰 요인으로 우려될 경우 해당 조치를 SPS 위원회 정례회의의 특정 무역현안(STC)으로 상정할 수 있음.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제기된 SPS STC 건수는 434건이며 이 중 해결 또는 부분 해결로 보고된 사안은 199건임.
  - 1995~2017년간 STC는 미국과 EU가 가장 많이 제기했으며, 제기 대상 국가로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순임. 한국은 9위로 14건의 STC를 제기 받음.
  - 최근 SPS STC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식품안전상의 목적으로 제기된 STC 안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편이며, 개발도상국의 SPS STC 논의 참여가 증가한 것이 특징임.
- 우리나라가 제기 받은 SPS STC는 14건이며, 14건 중 7건이 축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된 내용임. 14건 중 해결 또는 부분 해결로 보고된 건수는 8건임.
  - 해결 또는 부분 해결이 보고된 사안(8건) 중 유통기한, 수입통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와 관련된 3건은 WTO 분쟁으로 발전하였음. 태국산 닭고기, 최대잔류허용기준 검사 지침 개정, 캘리포니아산 감귤류 등과 관련된 사안은 양국간 협의체, STC 논의 등을 통해 해결함.
  - 해결 여부가 미보고된 STC 6건은 최근 제기된 2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회적으로 언급된 사안임. 최근 제기된 일본 식품 수입강화 조치에 관련한 사안은 분쟁으로 발전, 우리나라가 패소하여 현재 상소를 제기한 상황이며,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의 반복적인 STC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 SPS 협정 제6조(병해충 안전지역 및 지역적 조건의 적용) 관련, 선진국 및 주요 농산물 수출국은 SPS 개념을 국가에서 지역 또는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추세임. 우리나라가 향후 가입을 고려하는 CPTPP 협정의 SPS 조항이 구역화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화 인정 및 수입금지 해제 요청이 증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관련 검역분야 인력 및 조직을 보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함.
- 우리나라는 SPS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STC를 제기한 사례는 없으며 지지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중국 등의 국가가 활발한 STC 제기를 통해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위생 및 검역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주도적인 STC 제기로 양자간 협의에서 성과를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다자간 논의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SPS 지역화 적용과 PLS 시행(2019년)에 관련한 기존 STC 안건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되며,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SPS STC 사안을 발굴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도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01 | SPS STC(특정무역현안) 동향

## SPS 조치가 통상 마찰 요인으로 지적될 경우 특정무역현안(STC) 안건 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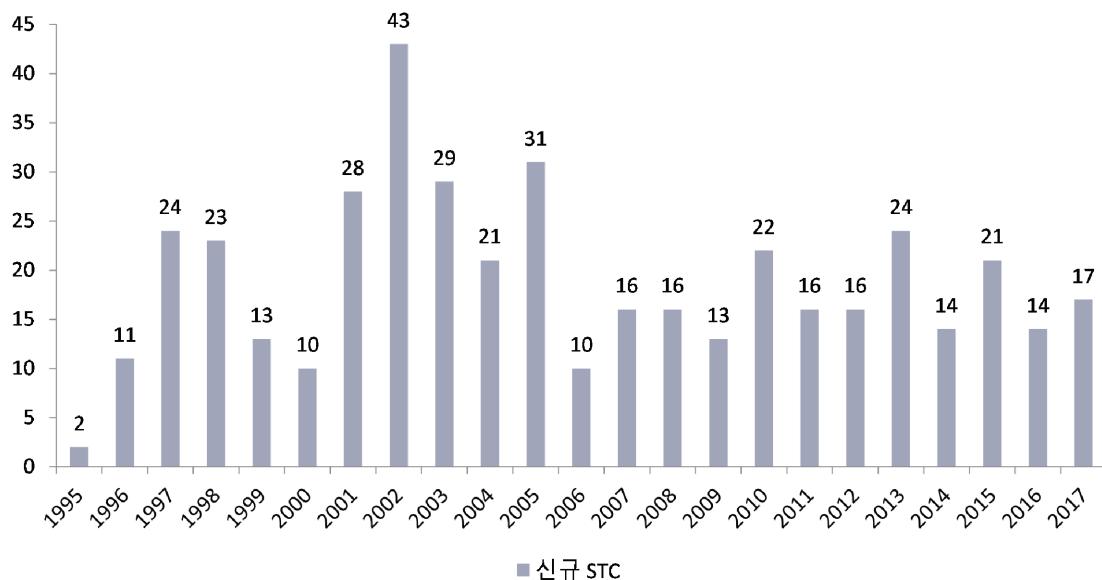
- WTO SPS 협정은 각국이 위생 및 검역(SPS) 조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제한을 방지하고, 각국의 SPS 조치를 국제표준에 맞춰 조화시키는 데 목적을 둠.<sup>1)</sup>
  - SPS 조치는 국제규정에 부합하면 각국이 합법적으로 수입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국에 존재하거나 발생한 특정 작물이나 과일과 관련된 병해충 또는 가축질병을 근거로 해당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 이러한 수입제한을 풀기 위해서 수출국은 수입국과 별도의 양자 검역협상을 진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WTO의 다자간 협의절차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 있음.
- WTO 회원국이 도입한 SPS 조치를 통상마찰 요인으로 인식한 이해당사국은 WTO SPS 위원회에 이를 ‘특정무역현안(STC)’ 안건으로 제기하여 논의할 수 있음.<sup>2)</sup>
  - WTO 회원국들은 SPS 협정이 규정하는 통보 의무(SPS 협정 제7조 투명성)에 따라 자국이 도입한 SPS 조치를 신속하게 WTO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통보된 SPS 조치에 대해 이해당사국들은 통보국의 SPS 질의처에 해당 규정과 관련한 문서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보국은 요구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짐.
  - 먼저, 당사국 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매년 3회 개최되는 SPS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 안건으로 상정하여 다자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짐.
  - 다자간 논의 과정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 회원국들은 특별협의절차(ad hoc consultations)를 활용하여 협의주재자를 통한 추가적인 양자 협의가 가능함.<sup>3)</sup>

1) SPS 협정은 ① 식품에서 유래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 ② 동물과 식물에 의해 운반되는 병해충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③ 병해충으로부터 동물과 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둔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함. 또한, SPS 조치는 ① 특정 사안에 대한 위험이 적절히 평가된 후 취해야 하며, ② 동 조치가 국제기준이나 지침 및 권고와 최대한 부합해야 하고, ③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다른 회원국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④ 동 조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필요함. 이에 따라 각국은 SPS 조치의 도입에 있어 WTO가 인정하는 3가지 국제표준 제정 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지침을 준수해야 함.

2) 강민지. 2016.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30-40.

- 이러한 절차로도 유의미한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WTO 분쟁해결제도상 법적 제소 단계로 발전하게 됨.<sup>4)</sup>
- 1995~2017년 동안 제기된 신규 SPS 특정무역현안(STC)은 누적 434건이며, 2002년에 43건이 제기되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함.

〈그림 1〉 연도별 SPS 신규 STC(특정무역현안) 제기 현황



자료: WTO SPS IMS(검색일: 2018. 7. 5.).

- 1995~2017년 누적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및 피제기 건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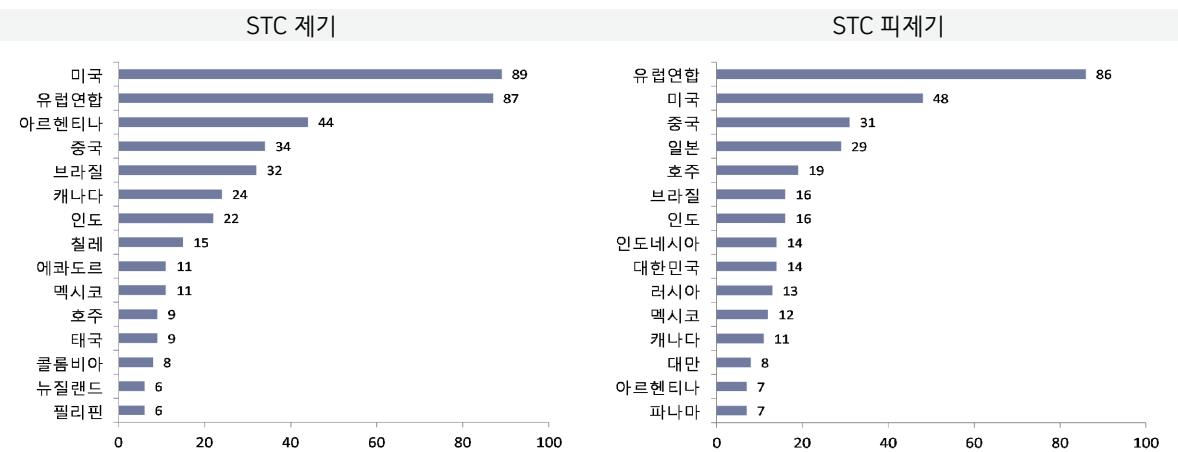
- STC 제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89건, 87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44건, 중국 34건, 브라질 32건, 캐나다 24건, 인도 22건 등의 순임.  
- 유럽연합은 중국(10건)과 미국(10건)을 중심으로 STC를 제기하였음. 미국은 유럽연합(23건), 일본(9건), 중국(9건)을 중심으로 STC를 제기하였음.

3) 2014년 6월 SPS 정례회의에서 회원국이 협의하여 도입된 자발적인 절차(voluntary procedure)로 SPS 협정 제12조 2항에 근거 함. 회원국은 특정무역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협의요청국의 협의요청 수락 및 협의주재자(Facilitator; 별도의 결정이 없을 시에 위원회 위원장이 기능) 선임 동의하에 협의가 개시됨. 협의주재자는 문제 해결 방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의회원국들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4) WTO 분쟁해결절차는 협의단계, 패널단계, 상소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음. 제소국의 협의 요청(제소) 이후 60일 이내에 양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패널 설치 요청에 따라 패널이 구성됨. 패널의 심리를 거쳐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며 패널은 최종판정 패널보고서를 당사국에 배포하고 회원국에 회람함. 분쟁 당사국은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있음. 비상소 시 패널보고서를 채택, 위반 사항에 대해 협정에 합치하도록 15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함.

- STC 피제기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럽연합이 86건으로 가장 많은 STC를 제기 받음. 이어서 미국 48건, 중국 31건, 일본 29건, 호주 19건 등의 순이며 우리나라라는 9위로 14건의 STC를 제기 받음.

〈그림 2〉 국가별 제기, 피제기 STC 건수(1995~2017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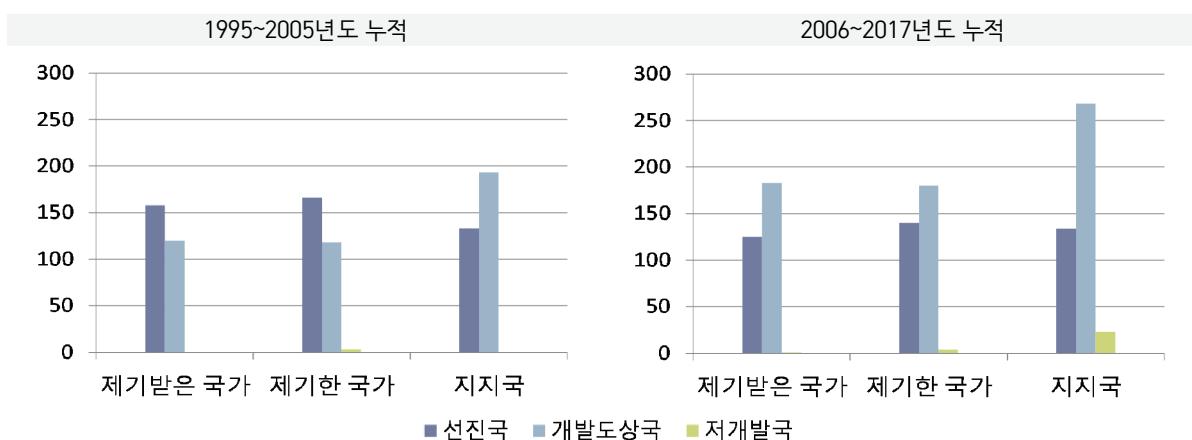


자료: WTO SPS IMS(검색일: 2018. 7. 5.)

□ WTO 회원국을 개발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STC 건수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개도국의 STC 제기 및 지지 건수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개도국의 SPS 규제에 대한 STC 제기 건수도 증가하였음.

- 개도국에 대한 STC 제기건수가 1995~2005년에 비해 2006~2017년에 증가한 것은 개도국의 SPS 규제 강화<sup>5)</sup>, 개도국 시장 진입에 대한 수출국의 관심이 증대된 것이 이유라 볼 수 있음.

〈그림 3〉 국가 개발 수준별 STC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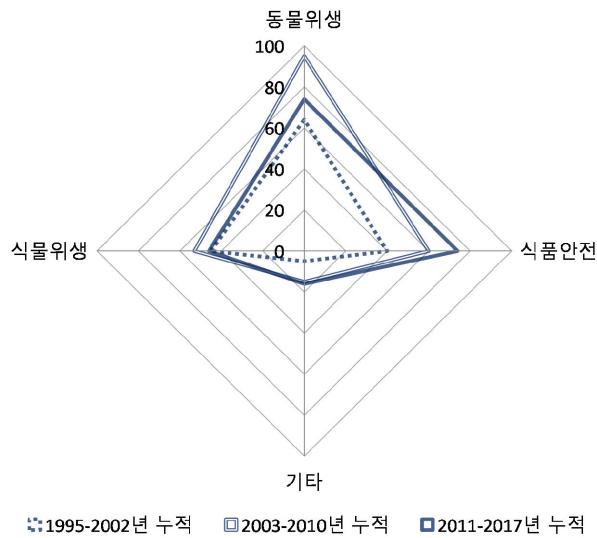


자료: WTO SPS IMS(검색일: 2018. 7. 5.)

5) 2015년 TBT 중앙사무국에서 발간한 『TBT 보고서』에 따르면 TBT 부문에 있어서도 개발도상국의 TBT 제도에 대한 STC 신규제기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위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개발도상국들의 국제 활동 증가와 더불어,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모호하고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정을 도입하는 사례, 전문성이 결여된 표준 등을 도입하는 사례가 있어 타국의 STC 제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STC 논의 동향을 목적별(동물위생, 식물위생, 식품안전,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면 동물위생 관련 사안의 논의 비중이 가장 높고,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STC 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그림 4><sup>6)</sup>.

<그림 4> 목적별 SPS STC 논의 비중 동향



자료: WTO SPS IMS (검색일: 2018. 7. 5.).

- 최근 2년(2016년, 2017년) 신규 제기된 31건의 STC 중 14건이 식품안전과 관련되며, 살충제, 중금속 등의 최대잔류허용기준(MRLs), 육류 및 관련제품의 수입제한 또는 규제조치에 대한 내용임.

- 식품안전 관련 STC 중 6건이 유럽연합의 규제에 대한 것으로 제기국은 브라질, 인도, 미국, 페루임. 대부분 살충제와 중금속의 최대잔류기준과 관련된 것이며 브라질의 경우 돼지고기 수입 제한, 닭고기 통관거부 등과 관련하여 STC를 제기하였음.

6) 신규 STC뿐 아니라 기 제기된 STC에 대해 재논의된 횟수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된 비중임. 1995~2002년에는 동물위생 64건(42%), 식물위생 46건(29%), 식품안전 40건(26%), 기타 5건(3%), 2003~2010년에는 동물위생 95건(43%), 식물위생 53건(24%), 식품안전 60건(27%), 기타 15건(5%), 2011~2017년에는 동물위생 74건(35%), 식물위생 46건(22%), 식품안전 74건(35%), 기타 16건(8%)임.

〈표 1〉 2016년과 2017년에 제기된 식품안전에 관한 신규 STC 현황

STC 번호	제기 사유	제기국	제기 받은 국가	제기 연도
407	EU의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 돼지고기 수입제한	브라질	유럽연합	2016
408	나이지리아의 육류 수입제한	브라질	나이지리아	2016
411	러시아의 독일산 육류 및 관련제품에 대한 수입제한(독일산 신선 및 냉장 육류, 독일 연방 3개주에서 생산된 육류 및 우유 가공품 수입제한)	유럽연합	러시아	2016
412	비터타놀(bitertanol),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 클로르메콰트(chlormequat) 최대잔류기준에 대한 EU의 SPS 조치 통보(G/SPS/N/EU/168)	인도	유럽연합	2016
413	과테말라의 난류 생산품에 대한 수입제한	멕시코	과테말라	2016
414	인도네시아의 원예 작물 및 동물성 생산품에 관한 식품안전 규제	필리핀	인도네시아	2016
416	중국의 인도네시아산 망고스틴(신선)에 대한 수입제한	인도네시아	중국	2016
419	미국의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최대잔류기준	이스라엘	미국	2017
422	프랑스의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관련 수입 규제	미국	유럽연합	2017
424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의 수입식품 규제(Guide for Control of Imported Foods)	미국	GCC 6개국*	2017
426	러시아의 와인 수입규제	몬테네그로	러시아	2017
428	EU의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메타락실(metalaxyl),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최대잔류기준	페루	유럽연합	2017
430	EU의 코코아 및 코코아 가공식품의 카드뮴(cadmium) 최대잔류기준	페루	유럽연합	2017
432	살모넬라 검출에 따른 EU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규제	브라질	유럽연합	2017

주: GCC 6개국은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임.

자료: WTO SPS IMS(검색일: 2018. 7. 5.).

□ 제기된 STC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합의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인 제기를 통해 협상과 토론이 가능하며, 해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해결 여부를 보고함.

- 2018년 3월 SPS 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22건의 STC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신규 STC는 5건임. 나머지 17건이 기 제기된 STC이며 이 중 9건이 5차례 이상 반복하여 논의되고 있는 사안임.

□ 1995~2017년간 보고된 434건의 STC 중 해결 또는 부분 해결로 보고된 사안은 199건임.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 중이거나, 해결 관련 보고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STC는 최초 제기 이후 반복 제기 없이 해결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1회 이상 논의되고 있음. 특히 2004년 제기된 광우병 관련 수입규제에 관한 STC 193는 2018년 3월까지 32차례, 2006년 제기된 EU의 신소재 식품 규제 개정안에 관한 STC 238에 대해서는 2017년 3월까지 22차례 논의되었으나 뚜렷한 해결 여부가 보고되지 않음.

## 02 | 우리나라의 SPS STC 현황 및 사례

우리나라가 1995~2017년간 제기 받은 SPS STC는 14건이며 제기한 사례는 없음

### 2.1. 우리나라가 제기 받은 SPS STC 현황

- 우리나라가 1995~2017년간 제기 받은 SPS STC는 14건이며, 14건 중 7건이 축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됨. 6건은 해결 여부가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상태이나 최근 제기된 STC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회적으로 언급된 사안임.

〈표 2〉 우리나라가 제기 받은 SPS STC 현안(1995~2017년)

STC 번호	제기 사유	제기국	지지국	제기 받은 국가	최초제기 연도	최후제기 연도	제기 횟수	해결 여부
1	유통기한 관련	호주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유럽연합	대한민국	1995	2001	6	부분 해결
2	수입통관조치와 관행	미국		대한민국	1995	2001	6	해결(2001)
13	SPS 규정 번역 문제	아르헨티나	태국	일본 대한민국	1996		0	미보고
35	냉동닭고기 수입 금지(리스테리아균 검출)	태국		대한민국	1997	1998	3	해결(1998)
65	소고기 수입 금지 (아르헨티나 구제역 청정국 지위 불인정)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1999		0	미보고
84	광우병 안전 국가에 대한 소고기 수입금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유럽연합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대한민국 뉴질랜드 미국	2001	2001	1	미보고
174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통보	호주	미국	대한민국	2003		0	해결(2013)
179	최대잔류허용기준(MRL) 실험 지침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뉴질랜드 필리핀	대한민국	2003	2005	4	해결(2013)
202	원예작물에 대한 셉토리아(잎사귀반점병) 통제	미국		대한민국	2004	2005	1	해결(2005)
248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지역화 인정 문제	브라질		대한민국	2007	2007	1	해결(2013)
247	광우병 관련 조치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	대한민국	2007		0	해결(2012)
274	한국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캐나다		대한민국	2008	2009	1	미보고
359	일본 방사능 오염에 따른 식품과 사료 수입 규제 강화	일본		대한민국	2013	2015	4	미보고
393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폴란드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유럽연합		대한민국	2015	2018	8	미보고

자료: WTO SPS IMS(검색일: 2018. 7. 5.).

- 우리나라가 제기 받은 STC 중 4건은 WTO 분쟁으로 발전함. 유통기한 관련 문제(STC 1)와 신선농산물 수입통관 관련 문제(STC 2)는 분쟁해결절차상 협의단계에서 상호합의에 도달하였으나, 캐나다 소고기 수입금지(STC 247), 일본 식품 수입금지 조치 강화 (STC 359)와 관련된 사안은 분쟁 패널 단계로 발전함.
  - 일본 식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의 제소로 2015년 분쟁 절차에 돌입하였으며(분쟁번호: DS485),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SPS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패소 판결남. 이에 우리나라 는 상소를 제기함.<sup>7)</sup>
    - 일본은 우리나라가 취한 조치 중 8개 혈액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함. WTO 패널은 이러한 조 치가 일본산 식품에 차별적이고, 무역 제한적이며, 투명성이 미흡한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SPS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함.<sup>8)</sup>
- 최근 제기 받은 STC 중 가장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사안은 2014년 아프리카돼지콜레라(ASF) 발생에 따른 폴란드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것으로, 최초 이의제기 이후 현재까지 8회에 걸쳐 논 의됨.
  - 수입금지 중단 결정 이후 폴란드로부터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시작되 었으나, 예비 위험평가 이후 폴란드 측의 가축위생설문서 답변서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수입위 험분석 절차를 중단함(2016년). 이에 대해 EU는 지속적으로 SPS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폴란드 측에 요구한 ASF 자유 구역 통제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 한 점을 강조하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유럽국가, 러시아(몽골, 카자흐스탄 접경지역)에서 ASF가 잇따라 발생하여 우리나라도 2018년 2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STC는 지속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음.

7) 2015년 5월 일본의 제소 이후 2016년 2월 패널이 구성됨. 2018년 2월 22일 패소판정 패널보고서가 회람되었고, 우리나라는 4월 9일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에 상소 의사를 통보(상소 제기)하였음. 일본도 4월 16일 상소에 응하였으나(cross-appeal) 2018년 상소건 증가 등으로 상소기관의 결정이 규정보다 지연되고 있음.

8) 자세한 내용은 패널보고서(Panel Report, Korea - 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WT/DS495/R and Add.1, circulated to WTO Members 22 February 2018 [appealed by Korea 9 April 2018]), 관련 국내보도자료(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참고자료, 2018.2.23.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보고서 회 람”) 등을 참고

## 2.2. 우리나라의 SPS STC 대응 사례(해결/부분 해결 8건)<sup>9)</sup>

### □ 분쟁해결절차상 협의 과정을 거쳐 상호 합의한 경우(3건)

- STC 1은 미국, 캐나다, 호주가 식품 유통기한과 관련하여 STC를 제기한 사례임. 국가별 세부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권장 유통기한 의무 표시 제도(Mandatory self-life requirement)에서 권장 제조업자 자율 결정 제도(Manufacturer determined self-life system) 도입 전환 과정에서 이의기 제기된 사안임.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WTO 제소로 2건의 분쟁이 있었음.
  - 미국은 냉장육, 냉동육, 냉동식품 등에 대한 유통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STC를 제기(1995.6.) 하였고 이와 유사한 시점에 WTO에 제소함(분쟁번호: DS5, 제소일: 1995.5.3.).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SPS 정례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은 1998년까지 식품의 유통기한 표기 자율화를 이행(부패나 변질이 쉬운 식품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으나, 미국은 특정 품목들에 대해 조기 자율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결국 분쟁으로 발전하였음. 이후 미국과 한국은 분쟁해결절차상 협의 단계에서 한국의 제도 개선 계획 범위 안에서 미국이 요구한 입장을 반영하여 협상안을 제출하였고 미국이 수용함으로써 상호합의됨(1995.7.).
  - 이후 미국은 한국이 합의된 바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위원회에 표명하였으나(1995.11.) 2001년에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하였음.<sup>10)</sup>
  - 캐나다는 용기에 담은 물의 유통기한과 오존처리 금지와 관련하여 분쟁해결절차상 협의를 요청하였고(분쟁번호: DS20, 제소일: 1995.11.8.) 이후 상호 합의함(1996.4.).
  - 호주는 고온살균우유(UHT 우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권장 유통기한 표시 의무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된 기간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음(1996.5.). 이후 한국이 제도 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으나 1997년 3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제안이 있었음. 이에 한국은 UHT 우유에 대한 조기 자율화 검토 의사를 전달했으며 (1997.10.) 이후 추가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 STC 2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 통관 시 병해충 검사 및 시험 방법에 대해 양국의 분쟁해결절차상 공식 협의가 있었음을 보고<sup>11)</sup>하면서 관련 문제에 대해 STC를 제기한 것임.
  - 이 사안은 미국이 한국의 식물검역절차(미국산 생과일에 대한 항온기배양검사)가 비과학적이고 국제 관행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을 지적한 것(1995.6.)으로 이후 WTO에 추가 제소하였음(분쟁번호: DS41, 제소일: 1996.5.24.).
  - 해당 분쟁(DS41)은 협의 중(in consultation)으로 나타나 있어 분쟁 절차상의 해결 여부는 알 수 없으나, SPS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9) STC 사례는 SPS IMS(<http://spisms.wto.org>)의 사례 요약과 관련 문서(G/SPS/R/\_)를 참고하여 작성함.

10) 관련문서: G/SPS/GEN/265

11) ‘부패과일 선별’ 제도와 ‘일반병해충에 대한 소독처분’ 조치에 관해 미국이 한국을 제소한 건(분쟁번호: DS3 제소일: 1995.4.4.)

- 1996년 5월 SPS 정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에 부합한 식물방역법 개정 내용과 시행 일정을 밝힘. 또한 항온기배양검사는 한미 양국 합의하에 도입되었음을 강조하며 검사 철폐를 위해서는 지중해과실파리의 박멸사업 종합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미국에 통보함.
  - 우리 측 요구에 따라 미국은 해충박멸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국내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의무적 항온기배양검사는 중단하기로 결정함(1996.5~10.).<sup>12)</sup> 6차례의 STC 논의와 양자 협의를 거쳐, 미국은 2001년 7월 해당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위원회에 통보함.<sup>13)</sup>
- STC 247은 2007년 2월 캐나다가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임. 이 사안은 2009년 분쟁으로 발전하였음.
-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2003년 캐나다 광우병(BSE) 발병에 따른 것임. 그러나 캐나다는 자국의 BSE 위험 관리가 OIE(세계동물보건기구) 기준보다 높고, OIE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이 30개월령 이하 동물의 뼈 없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BSE 국가 지위에 관계없이 수입제한조치를 금지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국의 수입제한조치 해제를 요구하였음.
  - 지속적인 협의 과정 속에서 2008년, 2009년 연달아 캐나다에서 BSE가 발생하며 협의가 지연 되었고, 2009년 4월 캐나다의 제소<sup>14)</sup>로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함. 분쟁절차상 협의단계에서 합의에 실패하여 패널이 설치되었으나(2009.8.), 지속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합의문(안)’이 도출됨. 이에 캐나다의 패널 작업 중지 요청 및 우리나라의 요청 수락에 따라 분쟁은 종결되었고, 2012년 6월 상호합의에 도달함.<sup>15)</sup>

〈표 3〉 우리나라가 제기 받은 SPS STC 현안 해결 사례(1995~2016년): 분쟁해결절차상 합의

STC 번호	제기 사유	제기국	최초제기 연도	내용
1	유통기한 관련	호주 캐나다 미국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C 제기 이후 미국(냉장·냉동육)과 캐나다(용기에 담긴 물)는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함. 각각 1995년 7월, 1996년 4월에 분쟁해결절차상 협의 과정을 통해 상호 합의함.</li> <li>- 호주(고온살균우유)는 한국 측의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밝힘.</li> </ul>
2	수입통관조치와 관행	미국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통관절차 선진화와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간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2001년 해결됨.</li> </ul>
247	광우병 관련 조치	캐나다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캐나다 광우병 발생에 따른 한국의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것으로 이후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음.</li> <li>- 2009년 캐나다의 제소로 분쟁해결절차상 협의가 시작됨. 2012년 상호합의에 도달, 패널 보고서 회람 후 위원회에 해결 여부가 보고됨.</li> </ul>

주: STC1은 부분 해결로 보고됨.

자료: WTO SPS IMS(검색일: 2018. 7. 5.).

12) 농림축산식품부. 2017. 『한국농업통상 50년사』. pp. 599–601.

13) 관련문서: G/SPS/GEN/265

14) 한국이 2008년 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해당 법에 근거한 조치가 미국산과 캐나다산 쇠고기를 차별하고 있다는 점, 2003년 5월 발생한 광우병을 근거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함(분쟁번호: DS41, 제소일: 2009.4.9.)

15) 최정선. 2015.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WTO/SPS 분쟁해결사례고찰』.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p. 8.

□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SPS 규정을 개정하거나 양국간 협의안을 반영하여 규정을 수정한 사례(3건)

- STC 35는 태국산 냉동닭고기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것임. 1997년 10월 태국은 한국의 태국 생산 공장 실사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진 이후에 내려진 해당 금지 조치에 대해 검토를 요청함. 1998년 3월 태국은 리스테리아균에 의한 태국산 냉동 닭고기의 수입금지조치가 위험평가 또는 국제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함.
  - 한국은 해당 조치가 수입금지 차원이 아니라 해당 물량에 대한 부적합 판정으로 통관거부된 것이라 응답함. 이후 정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식품공전(Food Code)의 개정 과정에 있음을 고려하여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개정 후 결과 통보를 약속함.<sup>16)</sup>
  - 1998년 6월 닭고기(가공용과 가공품)는 리스테리아 불검출(Zero tolerance)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식품공전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여부에 대한 태국의 확인 요구 이후 해당 사안은 해결된 것으로 보고됨.
- STC 179는 미국이 한국의 새로운 수입식품검사제도 개정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 지침의 개정 안<sup>17)</sup>에 문제를 제기(2003.10.)한 것으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에 합의함으로써 해결됨.
  - 미국을 포함한 호주, 유럽연합, 뉴질랜드는 개정된 지침이 SPS 협정의 부속서 C를 위배하고 검사비용 또한 높다고 지적함.
  - 한국은 개정안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위한 개정이었음을 설명하고, 시험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술 개발을 통해 비용 절감의 계획에 있다고 응답함. 이어서 한국은 2004년 의무검사 대상 농약의 수를 196개에서 47개로 수정한 개정안을 SPS/N/KOR/154, SPS/N/KOR/155로 통보함.
  -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높은 검사비용, WTO의 내국민 대우 조항 위반(2004.6.)<sup>18)</sup>, SPS/N/KOR/154에 제안된 ‘과거 기록이 없을 경우 의무 검사가 면제된다는 조항’이 최종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2004.10.)을 지적함.
  - 이에 한국은 충분한 검사가 가능한 시험비용은 미국이 제시한 것보다 높으나 최초에 공지된 것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함. 또한 국산품에도 농약 사용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 제품을 차별하는 의도는 없다고 밝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과거 기록이 없을 경우 의무 검사가 면제된다는 조항’이 최종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음(2005.3.).
  - SPS 위원회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고된 것은 2013년이나, USTR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sup>19)</sup>

16) 송주호·김미복·전상곤·정대희·임정민. 2010. 『농식품분야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148.

17) 곡류와 과채류에 대해 매년 196종의 농약에 대한 검사를 실시

18) 국내 생산자는 의무 시험 검사 대상에서 제외

19) USTR. 2006. *200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398.

- STC 202는 미국산 감귤류 수입 시 셉토리아균(Septoria citri) 유입 우려에 따라 캘리포니아산 감귤류의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임(2004.4.).  
 - 셉토리아균은 한국의 검역병해충 중 하나로, 미국이 검역상의 조치를 제안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감염 우려에 따라 셉토리아균 반복 발생 지역으로 알려진 두 개의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음.  
 - 한국 언론에 따르면 당시 취해진 수입금지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검역 안전성 보장방안을 유도해 내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음.<sup>20)</sup>  
 - 2005년 3월 한국과 미국의 기술협의(technical meeting)를 통해 새로운 검역요건을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함.

〈표 4〉 우리나라가 제기 받은 SPS STC 현안 해결 사례(1995~2017년): 규정 수정

STC 번호	제기 사유	제기국	최초제기 연도	내용
35	냉동닭고기 수입 금지(리스테리아균 검출)	태국	1997	- 한국이 리트테리아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의 포함범위를 수정하여 문제를 해결함(1998년).
179	최대잔류허용기준(MRL) 실험 지침	미국	2003	- 한국은 검사 비용을 1,960달러에서 500달러로 절감하고 의무 검사 대상 농약의 수를 196개에서 47개로 축소함. 2013년 해결되었다고 보고됨.
202	셉토리아(잎사귀반점병)균 유입 우려에 따른 과일 수입(캘리포니아산 감귤류) 통제	미국	2004	- 셉토리아균은 한국의 주요 검역 병해충으로 감염우려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졌으며 양국간의 기술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2005년).

자료: WTO SPS IMS(검색일: 2018. 7. 5.).

#### □ 해결과정이나 특별한 대응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2건)

- STC 174는 호주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 조례에 대한 한국의 SPS 통보<sup>21)</sup>에 우려를 제기한 것임. 미국 또한 한국이 카르타헤나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Cartagena Biosafety Protocol)의 이행을 한국이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관심을 표하였음.  
 - 한국은 투명성 요구 조항에 따라 관련 법안을 통보한 것이라 응답할 뿐 특별한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2013년에 STC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되었음.
- STC 248은 브라질이 한국의 지역화 조항의 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대상 품목은 브라질의 소고기와 돼지고기임. 2013년 이 문제는 상호 합의된 것으로 위원회에 통보되었음. 2018년 현재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지역화 인정 및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완료(2018.5.)되어 해당 주에서 생산된 돈육 및 돈육가공식품의 수입이 가능함.  
 - 브라질은 한국이 브라질의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구제역(FMD) 발생국을 이유로 수입위

20) 김승범. 2005.4.28. “미국 수입오렌지 전면 규제단계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http://news.hankyung.com/article/2005042873298>>

21) 관련문서: G/SPS/N/KOR/125

생요건조차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브라질 전역이 백신 비접종(without vaccination) FMD 청정국이 되기 전에는 수입요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함. 또한 적정보호수준 수립 및 OIE 기준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한국은 SPS 협정 제6조의 지역화 개념을 준수하고 지리학적 요소 등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있다고 응답함. 브라질의 2005년, 2006년 FMD 발생은 브라질이 FMD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FMD 자유 구역(free zone)에 대한 브라질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힘.
- 2007년 두 차례 논의된 이후, 2013년 11월 STC가 해결된 것으로 위원회에 통보됨.
- STC 논의를 통한 해결 과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2010년, 2013년 두 차례의 가축위생실태조사를 거쳐 2018년 수입위험분석 절차 최종 단계인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를 완료하였음. 소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위험분석 절차 4단계(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수입위험평가)에 있음.

〈표 5〉 우리나라가 제기 받은 SPS STC 현안 해결 사례(1995~2017년): 기타

STC 번호	제기 사유	제기국	최초제기 연도	내용
174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통보	호주	2003	- 한국의 특별한 대응은 없었으며 2013년 해결된 것으로 보고됨.
248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지역화 인정 문제	브라질	2007	- 브라질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지역화 인정에 대한 문제로 2013년 해결이 통보됨. - 2018년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 돼지고기와 그 가공품에 대해 지역화가 인정되어 수입이 허용됨.

자료: WTO SPS IMS(검색일: 2018. 7. 5.).

### 2.3. 우리나라가 지지한 SPS STC

- 우리나라는 직접 제기한 SPS STC 건은 없으나 지지국으로서 참여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태국산 간장 수입제한은 태국이 ASEAN을 대표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지지국으로 논의에 참여하였음(STC 89).
  - 일본의 식품 위생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지지국으로 참여하여 이의를 표하였으며, 미국의 육류·가금육·계란이 소량 함유된 가공식품의 SPS 조치에 대해 중국이 제기한 STC 사안에는 일본과 함께 논의에 참여하였음(STC 282).
  - 그 외의 STC 사안에는 다수의 국가들과 공동으로 지지국으로 참여함.

〈표 6〉 우리나라가 지지국으로 참여한 SPS STC 현안(1995~2017년)

STC 번호	제기 사유	제기국	지지국	제기 받은 국가	최초제기 연도	최후제기 연도	제기 횟수	해결 여부
74	신선 열대과일의 수입 제한	필리핀	대한민국 외 6개국	호주	2000	2000	1	미보고
81	목재 포장재	캐나다	대한민국 외 3개국	유럽연합	2000	2010	1	해결(2010)
89	간장 수입 제한	태국	대한민국	유럽연합	2001	2002	4	미보고
148	식품 위생법 개정 관련	중국	대한민국	일본	2002		0	미보고
150	육류와 유제품 위생 증명 관련	캐나다	대한민국 외 4개국	필리핀	2002	2003	1	해결(2003)
184	중국의 SPS 조치 통보 투명성 부족	이스라엘 미국	대한민국 외 12개국	중국	2004	2018	5	미보고
277	아시아매미나방 검역지역에서의 선박 및 화물 이동과 관련된 NAPPO 규제안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캐나다 멕시코 미국	2008	2010	4	해결(2013)
282	육류, 가금육, 또는 계란이 소량 함유된 가공식품에 대한 조치	중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09		0	미보고
330	인도네시아의 돼지고기 수입 금지	중국 유럽연합 뉴질랜드 미국	대한민국 외 9개국	인도네시아	2012	2015	7	부분 해결(2013)
357	식품안전 감독과 증명서 발급을 수행하는 제3자 기관의 승인에 대한 문제	중국	벨리즈 브라질 대한민국	미국	2013		0	미보고
382	유럽연합의 내분비교란 화합물 구분을 위한 규정 개정	아르헨티나 중국 미국	대한민국 외 39개국	유럽연합	2014	2018	10	미보고

자료: WTO SPS IMS(검색일: 2018. 7. 5.).

## 2.4. 중국과 일본의 SPS STC 제기 사례

□ 중국이 현재까지 제기한 STC는 36건으로 주로 미국, 유럽, 일본의 SPS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옴. 36건 중 14건이 부분 해결 또는 해결이 보고된 바 있음. 살충제, 첨가물, 중금속 등의 잔류허용 기준과 수입위험분석절차에 대한 이의제기가 주를 이룸.

-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사안은 유럽연합이 내분비교란 화합물 구분을 위한 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아르헨티나, 중국,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건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9개국이 이의를 제기함. 2014년 최초 제기 이후 10회 반복하여 논의되고 있음.
- 동일한 문제라 할지라도 국가에 따라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중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STC 256와 257은 유럽연합과 미국이 2004년 조류독감 발생 이후 취해진 중국산 닭 조제품 수입 금지 조치에 관한 것임. 유럽에 제기한 STC 256의 경우 세 차례의 STC 논의와 OIE 대표단의 조언 등을 통해 산동성에서 생산된 조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수입 금지를 완화하였고 중국은 부분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하였음. 그러

나 미국에 제기한 STC 257은 지속적인 양자협의와 STC 논의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으며 결국 2009년 중국의 제소로 분쟁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승소하였음(분쟁번호: DS392, 제소일: 2009.4.17.).

〈표 7〉 중국이 제기한 SPS STC(1995~2017년)

STC 번호	제기 사유	제기 받은 국가	최초제기 연도	최후제기 연도	제기 횟수	해결 여부
85	새우와 새우가공식품 수입제한(수입위험분석 개정 관련)	호주	2001	2007	9	부분 해결
119	코드린나방 발견에 따른 중국산 과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긴급 SPS통보문, G/SPS/N/PHL/35)	필리핀	2002	-	0	부분 해결
148	식품 위생법 개정 관련	일본	2002	-	0	미보고
153	배양 배지에 담긴 중국산 분재(Penjing) 수입 금지	미국	2002	2008	2	미보고
169	살충제 최대잔류허용 기준 규제 통합 및 재개정	유럽연합	2003	2004	1	미보고
178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한 표준 및 규격 개정	일본	2003	-	0	미보고
191	식품에 대한 살충제 최대잔류허용 기준	유럽연합	2004	-	0	미보고
198	영유아식품의 아플라톡신(aflatoxins)과 오크라톡신 A (Ocratoxin A) 규제	유럽연합	2004	-	0	미보고
201	살균제 보스칼리드(boscalid) 최대잔류허용기준 관련	일본	2004	-	0	미보고
203	소 유래 물질 첨가 상품(식품, 화장품 포함)에 관한 규정	미국	2004	-	0	미보고
207	차에 대한 살충제 잔류 검출 규정과 검사 방법에 대한 지침	유럽연합	2005	-	0	부분 해결
212	살충제, 수의용 약품, 사료 첨가물의 최대잔류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일본	2005	2011	9	부분 해결
216	중국 배(Ya) 수입 유예(검은점무늬병 유발이 의심되는 새로운 병원균(alternaria sp)의 발견)	미국	2005	-	0	해결
221	일본의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한 표준 및 규격 규정 관련(아스타크산틴(astaxanthin) 검출 기준)	일본	2005	-	0	해결
222	열처리된 짚과 사료작물에 대한 수입 유예	일본	2005	2008	3	해결
241	크리스마스 나무 수입 제한	미국	2006	2008	3	해결
256	중국산 닭 조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유럽연합	2007	2009	3	부분 해결
257	중국산 닭 조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미국	2007	2010	7	해결
267	최대잔류허용기준 관리 강화	일본	2008	2010	5	미보고
269	중국산 배 수입 제한(병해충위험분석 지연 관련)	미국	2008	2009	3	미보고
277	아시아미나방 검역지역에서의 선박 및 화물 이동과 관련된 NAPPO 규제안	캐나다 멕시코 미국	2008	2010	4	해결
282	육류, 가금육, 또는 계란이 소량 함유된 가공식품에 대한 조치	미국	2009	-	0	미보고
284	중국산 목재 수공예품 수입 규제	미국	2009	2010	3	해결
289	메기 생산과 검역에 관한 조치	미국	2009	2016	8	미보고
297	애완동물용 식품 수출기업 등록 관련	캐나다	2010	-	0	해결
299	미국의 식품안전강화법(Food Safety Enhancement Act of 2009) 관련	미국	2010	2012	4	미보고
322	폴리아미드와 멜라민 플라스틱 부엌용품	유럽연합	2011	2011	2	미보고
330	인도네시아 항구 폐쇄	인도네시아	2012	2015	7	부분 해결
331	밀가루에 대한 알류미늄 검출 기준	유럽연합	2012	-	0	미보고
352	미국의 cGMP 개정과 식품현대화법 재정 관련	미국	2013	-	0	미보고
357	식품안전 감독과 증명서 발급을 수행하는 제3자 기관의 승인에 대한 문제	미국	2013	-	0	미보고
377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국제 인증 규제	브라질	2014	-	0	미보고
382	유럽연합의 내분비교란 화합물 구분을 위한 규정 개정	유럽연합	2014	2018	10	미보고
415	미국의 해산물 수입 감독 프로그램	미국	2016	2018	4	미보고

자료: WTO SPS IMS(검색일: 2018. 7. 5.).

□ 일본이 현재까지 제기한 STC는 4건으로 2013년 터키에 제기한 전통식품 식품 첨가물 관련 논의를 제외하고 모두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취해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임.

- 중국, 대만과는 SPS 정례회의 및 양자협의 등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발생에 따라 일본 식품(수산물 및 농산물) 일부 수입금지 및 세습 검출 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함. 2013년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 발표 이후 이러한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본은 STC를 통해 이의를 제기함. 2015년 일본은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하였고 우리나라의 패소로 판정이 종결됨.

〈표 8〉 일본이 제기한 SPS STC 현안(1995~2017년)

STC 번호	제기 사유	제기 받은 국가	최초제기 연도	최후제기 연도	제기 횟수	해결 여부
354	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 제한 조치	중국	2013	2017	10	미보고
359	방사능 검출에 따른 식품 수입 제한 강화	대한민국	2013	2015	4	미보고
367	전통식품에 첨가되는 특정 식품첨가물의 사용 금지	터키	2013	-	0	미보고
387	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 제한 조치	대만	2015	2017	6	미보고

자료: WTO SPS IMS(검색일: 2018. 7. 5.).

## 03 | 시사점

### SPS 지역화 적용과 PLS 시행과 관련한 기준 STC 안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

- 1995~2017년 SPS STC 제기 및 논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동물위생 관련 STC 논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최근 식품안전 관련 STC 신규 제기 및 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신흥경제국인 개발도 상국들의 활발한 STC 제기 및 지지와 개발도상국의 제도에 대한 STC 제기가 증가한 점도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를 설명함.
- 우리나라가 제기 받은 SPS STC는 주로 SPS 협정 제5조 위험평가 및 보호 적정수준 결정, 제6조 병해충 안전지역 및 지역적 조건의 적용, 제3조 국제기준과의 조화의 내용과 관련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뿐만 아니라 기 제기된 STC도 상당 부분 위 3개 조항 준수 여부와 관련됨.
  - SPS 협정은 기본적 의무에서 SPS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5조와 관련하여 위험평가와 보호수준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는가가 관건임. 따라서 SPS 조치와 관련된 과학적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
- 한편, 제6조 지역화 조항과 관련하여 선진국들과 농산물 수출국은 SPS 개념을 국가에서 지역 또는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STC 안건 중 이와 관련된 논의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출국들은 기후나 방역 노력 등의 차이로 인해 SPS 위험도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SPS 위험이 낮은 지역에 완화된 수입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 2018년 우리나라는 브라질의 돈육(산타카타리나주/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완료), 미국의 가금 및 가금육(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시 지역화 인정/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중)과 관련하여 지역화를 인정한 바 있음.
  - 향후 우리나라가 가입을 고려하는 CPTPP 협정 SPS 조항의 구역화 인정, 협상이 진행 중인 MERCOSUR TA 등에서 지역화 논의 구체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화 인정 및 수입금지 해제 요청이 증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관련 검역분야 인력 및 조직을 보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됨.<sup>22)</sup>

22) 또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자국 내 SPS 조치가 수입국의 보호수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수입국은 이를 자

### 신규 수출시장 개척 시 불필요한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SPS STC 활용 검토

- 국내에서 2019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와 관련하여 제기된 STC 안건과 논의내용을 참조하여 국내외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에 사용되는 살충제, 제초제, 중금속 등의 최대잔류허용기준(MRLs)의 수정, 추가 등과 관련한 내용은 수출국들의 잣은 STC 제기 사안이며 최근 유럽연합(EU)의 MRLs 관련 SPS 조치 통보에 대한 STC 제기가 많은 편임.
  - 우리나라도 ‘2019년 PLS 전면 시행’에 대해 2017년 8월 WTO에 통보하였음(통보문: G/SPS/N/KOR/572). EU는 대표적인 PLS 운영국가로 STC 논의 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PLS 시행 전후 대응방안 마련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PLS 도입 및 MRLs 변경 등과 관련한 위 통보문에 대해 현재까지 STC 제기는 없으나, 2005년 일본이 PLS 도입 시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STC를 제기 받은 바 있으며 제도 도입 시점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 SPS 협정에 따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STC 활용은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STC를 제기하기보다는 지지국으로서 STC 논의에 참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주도적으로 STC를 제기하여 양자간 협의에서 성과를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다자간 논의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에서 신규 시장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SPS STC 사안을 발굴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도 국내 농식품 기업의 신규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국의 SPS 조치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